來美安
래 미 안

래미안 삼성2차 보류세대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하시기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2182, 10500호(2009. 1.22 / 4.23)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지상10~24층 8개동 275세대 중 3세대
-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 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층수 (최상층)	층별 구분	세대수	주택형별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공급면적			세대별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포함)	계약 면적					대지비	건축비	총 분양금액	10%	90%
				전용	주거공용	소계										계약시	입주시(계약후 90일이내)
민영 주택	22144-01	2009000228 (01)	84.92	84.92	30.150	115.07	61.16	176.23	13.57	24	17층	1	713,156	320,404	1,033,560	103,356	930,204
	22144-02	2009000228 (02)	164.72	164.72	34.09	198.81	118.66	317.47	86.78	15	1층	2	1,307,143	587,267	1,894,410	189,441	1,704,969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설공정이 100%를 초과하여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3 의거)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의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 포함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층 · 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정산할 예정임(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기준)
- 계약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2003. 6.14) 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주택담보대출제한이 적용됨
- 당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은 2002.9.6.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전매 제한 규정(계약체결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이 적용되며, 청약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 포함]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로 청약 가능)되며,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2.9.5 이후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로 청약 가능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4.29)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의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증액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치금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일순위 경쟁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단, 2009.4.1 ~ 2011.3.31 기간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중이라도 청약이 가능함)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청약관련 입주자저축 및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 일자	접수 장소 및 시간	추첨 및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추첨제 신청자격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되고 2순위 청약은 불가함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09. 5. 6	- 접수 장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 접수 시간 인터넷 청약 08:00~17:30	- 일시 : 2009. 5. 15 - 장소 : 래미안 홈페이지 (www.raemian.co.kr) - 아시아경제 신문에 게재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1980. 8. 29 이전 국민은행(舊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 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전용면적 85㎡ 초과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2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9.5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가점제/추첨제 신청자격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9. 5. 7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2009. 5. 8	- 접수 장소 : 제일은행 전국 영업점 - 접수 시간 : 09:30~16:30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기 바람.

▷ 1,2순위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함.(창구 접수시간(09:30 ~ 16:30)

▷ 3순위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제일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함.(창구 접수시간(09:30 ~ 16:30)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2)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2)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2007.9.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75%	50%
추첨제	25%	50%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 항목	가점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비 고
① 무주택 기간	32	30세미만 미혼세대주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가입자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17	6월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단, 2008.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8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8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외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청약신청 접수 방법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 :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은행 창구 방문 청약신청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 : 제일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서명 • 배우자가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배우자관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전주택형 공통	신청금 납부방법
청약 신청금	200만원	창구청약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 비 서 류	
당첨자발표(2009. 5. 15) 익영업일 이후 (평일 09:30 ~ 16:30)	청약접수한 제일은행 본/지점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추가구비 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제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제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 아래와 같이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를 결정하오니 참고하기 바람.

구 분	선 정 방 법
공 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입주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당첨자 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자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 및 동 · 호수 추첨일시는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재개발 조합원에 기 배정된 동 · 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동 · 호수에 대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 · 호수를 결정함.

▣ 계약체결안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대 상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장소	비 고
정당 당첨자	2009. 5. 20 ~ 2009. 5. 22 (3일간)	삼성물산 강남사업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0번지 아남타워2층 위치)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 됨

▣ 계약시 구비사항

대 상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 KB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용) 1통 • 인감도장 • 계약금(수도권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 내용 확인서류 등) 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주민등록등본 1통, 초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③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④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의 경우에 한함) ⑥ 주택소유 현황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①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②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③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④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구비사항	• 본인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③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②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③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④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⑤ 1,2,3순위 당첨자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함.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7조"에 준함.

▣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써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보유특례)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소형 · 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8.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8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입주예정일 안내

- 입주예정월 : 잔금납부일 이후 즉시 입주가능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당첨자에 대하여 입주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점검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

- 준공완료 세대로 해당안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안내

- 은행명 : 제일은행 (계좌번호 : 441-20-060018) 예금주 (삼성물산, 해청1조합)

▣ 유의사항

1. 청약 시 신청한 내용과 민영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창구청약자 :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2.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3.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본 주택의 당첨자(3순위 당첨자 및 계약미체결자 포함)는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순위가 제한됨
5.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6.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서명〉은 신청자의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은행 직원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7.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8.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조합내부사정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음
9.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11.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12.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13.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로 인해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14. 마감자재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당첨 후 실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15. 래미안 홈페이지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내용은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16.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입주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8.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19.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각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20.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함
21.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있음
22. 세대별 대지지분은 해당 단지의 공동주택 대지면적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 산정하였음
23.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 득한 사업장으로 분양 관련자료는 제작하지 않고 당사 래미안 홈페이지 (www.raemian.co.kr)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세대 평면도, 마감자재 내역 등)
24. 본 아파트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전 사전점검 등을 통하여 실제 해당 세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명

· 사업주체명 : 해청1단지 재건축 조합 (등록번호 : 120-86-56082호)
· 시공업체명 : 삼성물산㈜ 건설부문(주택건설지정업 지정번호 제48호)

▣ 문의안내

· 당첨자 현장 견학 안내 : 삼성물산 강남사업소 (02-552-3776, 대표번호 0번)
· 청약관련 문의는 래미안 홈페이지를 참조바라며 별도의 분양상담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강남사업소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해청1단지 재건축 조합** 시공 SAMSUNG **삼성물산** 건설부문

문의 02-552-3776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강남사업소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